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추가〉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5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¹⁾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3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u>생명·신체에</u>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생</u> <u>명·신체·재산에</u> ----- -----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신설>	제3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u><신설></u> 5. 6. (생략) ② (생략)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 5.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헌법 제30조²⁾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

2)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는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구조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제4장(구조대상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에서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개년 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분 연도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21	191	9,792,147	144	8,894,672	25	639,389	22	258,086
2022	189	9,502,935	138	8,406,292	23	821,919	28	274,724
2023	149	8,989,710	111	8,357,448	14	408,967	24	223,295

*자료: 법무부

□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으나³⁾,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3) 「The 현안 제7호 전세사기」(국회도서관, 2023.4.21.)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의 구조”를 추가하고,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재산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근거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와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⁵⁾

○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

4)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5)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

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입법이 단지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⁶⁾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인 형성 과정에서 헌법⁷⁾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소급부금지 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⁸⁾

□ 개정안은 이처럼 국가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적극적·실효적으로 구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방화, 절도, 손괴,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따른 재산 피해도 그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재산범죄 피해자에 구조금을 지급하여 신속·효율적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7)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8) 과소급부금지 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 등 참조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경우, 현행법 제16조⁹⁾에 따라 재산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의 종류, 구조금액 및 지급요건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화·구체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즉, 현행법 제17조 및 제22조¹⁰⁾는 구조금의 종류를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각 구조금의 구조금액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재산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구조금의 종류를 신설하고,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구조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추가하고 있으나, “사망”, “상해”, “중상해”와 같은 현행법상 요건에 비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라는 요건은 추상적이고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구체화·명확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요건 및 산출근거 >

구 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급요건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장해 발생시 (장해등급 1~14등급까지)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산출근거	기준금액에 유족순위, 유족의 수 등을 고려	기준금액에 장해등급, 부양가족의 수 등 고려	기준금액에 치료개월 수, 부양가족의 수 등 고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5조		

* 자료 : 법무부

- 둘째, 개정안에 근거하여 재산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가능성 및 그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재산범죄 발생건수(2022년도 기준 634,864건)는 강력범죄 발생건수

(2022년도 기준 32,097건)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많고, 현재 구조금 지급 사업예산은 벌금 수납액, 구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성 기금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어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 조달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¹¹⁾

< 2022년도 강력범죄 및 재산범죄 발생건수 >

(단위 : 건)

강력범죄		재산범죄	
죄명	발생건수	죄명	발생건수
소계	32,097	소계	634,864
살인	293	절도	177,108
강도상해	162	불법사용	875
강도치상	9	침입절도	4,737
강도살인	14	장물	256
강도치사	1	사기	302,607
방화치상	21	컴퓨터등사용사기	21,722
방화치사	15	부당이득	49
강간등상해	148	편의시설부정이용	1,480
강간등치상	36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 급에관한특별법	499
강간등살인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3,001
강간등치사	2	횡령	61,354
폭행치상	1,669	배임	4,058
폭행치사	55	배임수재	222
상해	29,209	배임증재	64
상해치사	45	손괴	56,830
약취와 유인상해,치상,살해,치사	1	손괴치상	2
체포치상	3	손괴치사	
체포치사	-		
감금치상	77		

* 자료 : 법무부 제공(「2022 범죄분석」, 대검찰청)

11) 동 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현재 비용추계가 완료되지 않음

□ 참고로, 법무부는 ① 헌법상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의 대상에서 재산범죄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 재산범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범죄에 대해서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② 개정안은 재산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할 구조금의 종류 및 산출근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급요건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시 혼란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며, ③ 현행법상 피해자의 재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한정된 국가 재원 등 예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